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319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2년 12월 19일

제 안 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개정안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하되, 조례의 체계 등을 고려해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문번호의 수정 (안 제5조의1~제5조의3), 항 번호 삭제 등 자구 정비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의1부터 제5조의3까지를 각각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로 한다.

안 제5조의3(중전의 제5조의2) 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.

안 제5조의4(중전의 제5조의3)제5항 중 “제5조의1, 제5조의2”를 “제5조의2,
제5조의3”으로, “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”를 “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
서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<신·구조문대비표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<u>제5조(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 설치) ①</u> 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보수수준에 관한 사항</u> <u>2.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</u> <u>3.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</u> <u>4.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</u> <u>5. 안전과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</u> <u>6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</u> 	<p><u><삭 제></u></p>	<p><u>(개정안과 같음)</u>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<u>사항</u></p> <p>② <u>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③ <u>위원은 시 관계공무원, 시의원,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, 사회복지기관관계 인사,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④ <u>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⑤ <u>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5조(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) ① 「사회</p>	<p>제5조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	<p>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시 처우개선위원회(이하 “처우개선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<p>② 처우개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</p> <p>③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</p>	

현행	개정안	수정안
	<p>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④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.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.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. 시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 	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 data-bbox="209 409 379 450"><신설></p>	<p data-bbox="662 275 1010 383">무를 담당하는 공무원</p> <p data-bbox="608 409 1010 517">제5조의1(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)</p> <p data-bbox="644 544 1010 853">①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p> <p data-bbox="644 880 1010 1256">② 처우개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</p> <p data-bbox="644 1283 1010 1924">③ 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</p>	<p data-bbox="1038 409 1441 517">제5조의2(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)</p> <p data-bbox="1075 544 1441 651">① ~ ③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 data-bbox="209 275 379 315"><신설></p>	<p data-bbox="608 275 1008 853"><u>제5조의2(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의 해임·해촉) ①</u> 시장은 위촉된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</p> <ol data-bbox="644 880 1008 1787"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	<p data-bbox="1040 275 1441 853"><u>제5조의3(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의 해임·해촉)</u> 시장은 위촉된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</p> <ol data-bbox="1077 880 1441 981"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4. (개정안과 같음)
<p data-bbox="209 1807 379 1848"><신설></p>	<p data-bbox="608 1807 1008 1989"><u>제5조의3(처우개선위원회 회의 등) ①</u>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</p>	<p data-bbox="1040 1807 1441 1989"><u>제5조의4(처우개선위원회 회의 등) ① ~ ④</u>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	<p>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</p> <p>② 처우개선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③ 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.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3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<p>④ 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</p>	

현행	개정안	수정안
	<p>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⑤ 제5조, <u>제5조의1, 제5조의2 및 이 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</u> 규정한 사항 외에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처우개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</p>	<p>⑤ ----, <u>제5조의2, 제5조의3 및 이 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삭제하고 제5조부터 제5조의4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) ①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시 처우개선위원회(이하 “처우개선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
 2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② 처우개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- ③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④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1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2.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 - 가.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
 - 나.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
 - 다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
 3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

사람

4. 시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
제5조의2(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) ①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중 위촉
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처우개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시장이 소속
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

③ 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
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
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.

제5조의3(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의 해임·해촉) 시장은 위촉된 처우개선위원
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
하거나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
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5조의4(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 등) ①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
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처우개선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
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
장이 소집한다.

1.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2.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
3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

④ 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

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제5조, 제5조의2, 제5조의3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처우개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<신·구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5조(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 설치) ① 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보수수준에 관한 사항</u> <u>2.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</u> <u>3.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</u> <u>4.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</u> <u>5. 안전과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</u> <u>6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<p><u>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<u>③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, 시의원,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, 사회복지기관관계 인사,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.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 제>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④ <u>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⑤ <u>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<u>제5조(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)</u></p> <p>①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시 <u>처우개선위원회(이하“처우개선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</u> 2. <u>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</u> <p>② <u>처우개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신설></p>	<p><u>고려하여 구성한다.</u></p> <p>③ <u>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④ <u>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u> 2. <u>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</u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<u>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</u> 나. <u>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</u> 다. <u>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</u> 3. <u>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</u> 4. <u>시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</u> <p><u>제5조의2(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) ① 처우개선위원회 위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신설></p>	<p><u>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처우개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</u></p> <p><u>③ 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</u></p> <p><u>제5조의3(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의 해임·해촉) 시장은 위촉된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</u> <u>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</u> <u>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</u>

현행	개정안
<p data-bbox="209 539 379 584"><신설></p>	<p data-bbox="810 271 1187 315"><u>않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</p> <p data-bbox="810 338 1345 517">4. <u>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</u></p> <p data-bbox="775 539 1345 584">제5조의4(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 등) ① <u>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810 607 1345 786">② <u>처우개선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810 808 1345 987">③ <u>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810 1010 1345 1189">1. <u>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</p> <p data-bbox="810 1211 1345 1301">2. <u>시장이 요청하는 경우</u></p> <p data-bbox="810 1323 1345 1503">3. <u>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</u></p> <p data-bbox="810 1525 1345 1928">④ <u>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810 1951 1345 1995">⑤ 제5조, 제5조의2, 제5조의3</p>

현행	개정안
	<p><u>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</u> <u>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</u> <u>처우개</u> <u>선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</u> <u>요한 사항은</u> <u>처우개선위원회의</u> <u>의결을 거쳐</u> <u>처우개선위원회의</u> <u>위원장이 정한다.</u></p>